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나102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률상 대리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2. 1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2. 선고 2019가단5202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56,556,7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556,70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 요지

-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위 2013. 2. 27.자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고는 2020. 6. 11.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담보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를 하지 않아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연대보증인인 C은 위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3)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32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제천시 F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 채권최고액 1,834,000,000원, 2013. 1. 15. 채권최고액 48,000,000원, 2013. 2. 7. 채권최고액 206,000,000원, 2013. 4. 24.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별도의 물적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신용대출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저당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2. 11. 30.부터 2013. 2. 28.까지 5회에 걸쳐 대출한 1,949,000,000원 중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회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제외한 일부만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C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3)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41,636,509원)과 전북 순창군 G 전 407㎡(시가 2,328,040원) 외에도 소외 회사에 대한 비상장주식 31,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비상장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1억 3,3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이 200만 원으로 소외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채권액의 규모만 해도 1,612,116,000원에 달하는 점, 주식회사 E에 대한 비상장주식은 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식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43,964,549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41,636,509원 + 전북 순창군 G 전 407㎡ 시가 2,328,040원)이라고 할 것인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원금 96,341,081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한바,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정하경, 판사 박선민